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 IT·핀테크전략국 담당자 변남주 (직위, 성명) 선임조사역 연락처 02-3145-7424
요청대상 행위	□ 크롬북 (Chrome book)과 VMWare Horizon Client 의 자체 보안기능 을 이용하여 간접접속 방식 으로 회사 내부망으로 원격 접속 할 경우「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를 및 [별표7]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는지
판단	□ 질의하신 원격접속 방식은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를 및 [별표7]을 충분히 준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.
판단이유	□ 금융회사는 망분리 규제로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) 인해 회사 외부에서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없어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하였으나, ○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(20.2월)한 바 있고 ○ '20.11.6. 에는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을 개정하여 보안을 갖춘 경우상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.(제2조의2 제1항 제2호) □ 여기서 보안을 갖춘 경우란, 회사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 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며 [별표7]의 망분리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. ○ 귀사는 크롬북(Chrome book)과 VMWare Horizon Client의 자체 보안기능'을 이용 시 [별표7]의 백신 설치,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악성코드 감염, 정보유출 리스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. * 인터넷 화이트리스팅 기능으로 크롬북 자체 업데이트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 차단, 부팅 시 자동 패치 적용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체크, 인쇄 '캡쳐 기능의 비활성화, VMWare Horizon Client로 접속 시 이중인증 적용 및 SSL 통신 ○ 그러나 크롬북을 개발자 모드로 이용 시 회사가 설정한 보안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고, VMWare Horizon의 SSL 암호화 통신의 보안성이 낮아,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□ 따라서, 귀사가 문의하신 크롬북과 VMWare Horizon Client의 자체 보안기능만을 이용한 원격접속 방식은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를 및 [별표7]을 준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